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행안부 2012. 2.22)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연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안 제5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 제4항)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안 제5조 제3항)
 - (현행) : ① 비서관 및 비서, ② 외국인 임용
 - (개정) : ①, ② + ③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 ④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안 제9조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안 제10조)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 후임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 기타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이 통보되어 우리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제3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함.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 안 제9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선 함.
 - 안 제10조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 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보완 함.
 - 안 별표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변경 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별정직공무원들도 우리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5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행안부 2012. 2.22)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연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안 제5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 제4항)

나.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안 제5조 제3항)

- (현행) : ① 비서관 및 비서, ② 외국인 임용
- (개정) : ①, ② + ③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④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안 제9조 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마.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안 제10조)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후임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바. 기타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3.22~4.11)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를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④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의3(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을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는 삭제한다.

1. 직제·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될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 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용 자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p>※ <u>비 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 2조제 3항제 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신 설〉</p> <p>제3조(임용권자) ①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하여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p> <p>②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p>	<p>제1조(목적) ----- -----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p> <p>제2조(적용범위) ① ----- -----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 ----- 조례로 ----- -----.</p> <p>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p> <p>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할 수 있다.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용자격) ① ----- 각 호 ----- ----- 사람은 ----- -----.</p> <p>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포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p> <p><신설></p> <p>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신설></p>	<p>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 7조제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p> <p>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p> <p>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변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3. <u>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p> <p>④ <u>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p>
<p><u>〈신 설〉</u></p>	<p><u>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p>
<p><u>〈신 설〉</u></p> <p>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생략)</p>	<p><u>제5조의3(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u></p> <p>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p> <p><신 설></p> <p>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p> <p>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생략) <p>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p>	<p>② ----- ----- -----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p> <p>제7조의3(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p>제8조(당연퇴직) ----- --- 각 호----- -----.</p> <p>제9조(직권면직) ----- 각 호의 어느 하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될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삭 제> <p>제10조(휴직)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 1호부터 제 3호까지, 같은 조</p>

현행	개정안
<p>명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p> <p><u>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p> <p><u>제10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p> <p><u>② 제10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u>〈신 설〉</u></p>	<p>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p><u>제11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u></p>

변 행	개 정 안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p>	<p><u>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u></p> <p><u>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u></p> <p>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p>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1. 비상대비 업무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화생방지도원	6급 상당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1. 육군의 하학 및 전투병과에 예비역 중위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상당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5. 행정관리 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지도사	6급 상당 (생활체육 상당)	· 여가생활계획의 수립 및 수행 · 여가생활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도 · 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등 운영 · 여가생활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포함)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7급 상당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 교실 등 운영	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공과금요원	8급 상당	· 공과금자료의 정리 보존 · 공과금업무 분석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 공과금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9급 상당	· 공과금자료의 정리 보존 · 공과금업무 분석	1. 고등학교졸업이상으로서 2월 이상 전산교육이수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관련 분야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 6월 이상인 자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현행

6.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구 의 회 전 문 의 원	5급 상당	·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 자	
속 기 사	7급 상당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 상인 자 2.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 상당	"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 상인 자 3.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9급 상당	"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 지자	

7. 위생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영 양 사	8급 상당	· 구내식당급식 관리	1.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개정안

상당계급	임용자격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p>※ 비 고</p> <p>○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 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p>	